「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**심 사 보 고 서**

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23(수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문화체육과장)

○ 우리 지역 작은도서관의 설치·운영 및 지원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,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정보 혜택을 제공하고 소규모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·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 임.
 - 주요 내용을 보면

-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설치기준 및 조건을 규정하였고
- 등록과 폐관 절차를 비롯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운영인력, 운영시간, 휴관일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였으며
-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, 인건비 및 기타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
 - 공공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 하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해야 할 것임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 - 【붙임】평창군 작은도사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